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야영장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야영 환경을 구축하며,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업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원시설업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첨부(안 제10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제2호, 안 제13조제3호)
-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 건축물 요건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별표2 제8호가목)
- 다. 야영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별표7 제6호바목)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야영자가 바뀌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 일광 등 건조시켜야 함
- 라. 유원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허가(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 사유 기재 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지 제16호 및 제1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0조제5항”을 각각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제40조제5항”을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8호가목 중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을 “4층”으로 한다.

별표 7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야영자가 바뀌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허가증 분실사유 :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5.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 업 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신고증 분실 사유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사설 또는 유 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 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 등)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u>제40조제5항</u> 에 따른 검사결과서	3. ----- ----- ----- <u>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② ----- ----- ----- ----- -----

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와
그 폐기 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3.·4. (생략)

③ (생략)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
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
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

1. (현행과 같음)

2. -----

----- 제7조제
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
획서 및 제40조제5항-----
--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

-----.

1.·2. (현행과 같음)

3. -----

----- 제11조제2항제5

따른 검사결과서	<u>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u>
	<u>제40조제5항---</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